■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3.12.12>

전산자료 이용 [ ] 심사 [ ]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이용목적		
	근거법령		
	자료의 범위	[ ] 기개발자료	[ ] 가공자료
		[ ] 전국 [ ] 시·도	[ ] 시·군·구
	자료제공방식		

자료 관리	보관기관	
	안전관리대책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사항의 설명자료 1부. 2.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건당 1만원 (이용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전산자료 이용 심사신청은 자료이용 목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신청합니다. 2.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2개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게 신청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 g/㎡)